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39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391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소642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4. 8.

판결 선고 2020. 4. 2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소642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4.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6.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를 찾아가 상담료로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불면증 및 수험 스트레스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 병의, 기치료를 받기로 하고 현금으로 130만 원, 카드로 10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치료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7. 기치료를 받은 후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사무장에게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치료를 받는 중 두통, 손발저림, 안면통증과 함께 스트레스가 심해 기치료를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치료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담료 5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행위로서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해지할 수는 없다. 원고는 상담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담을 마쳤으므로, 상담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5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위협적으로 치료를 진행하여 긴장감, 심한 두통을 앓게 되었고, 피고가 교부해 준 명함과 달리 D종교단체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상담비 및 치료비 235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기치료비 230만 원의 반환을 넘어 이미 완료된 상담비 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5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기치료비 23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치료계약의 성질 이 사건 기치료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치료, 병의치료 등의 행위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다.

2)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치료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치료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2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 기치료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이 완료된 2018. 8. 7.자 기치료비는 공제되고 반환되어야 하나, 이 사건 기치료계약 기간이 최대 9개월로 정해져 1회분 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상담료로 5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가 받은 기치료의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230만 원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치료계약을 위하여 2018. 8. 18.

제사비용으로 50만 원, 천도재를 위한 스님들의 거마비용으로 140만 원 등 합계 205만 원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할 비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원고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8. 8. 14. 이 사건 기치료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이미 1차 시술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췌장 췌관염을 앓고 있다고 있으므로 230만 원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피고가 2018. 8. 18. 거마비 140만 원 및 상차림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인 2018. 8. 20. 작성된 답변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었어야 하나 위 답변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마비 140만 원, 도우미 10만 원, 상차림 5만 원 등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치료계약이 해지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 판결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